

# 입법정보

- ◆ 법률 제정·개정 주요사항 및 타 시·도 조례 입법동향,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 법령 입법예고 사항은 [법제처\(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법제처(입법예고) :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List.mo?mid=a10104010000>
  -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isOgYn=Y>



# 목 차



## I. 법령 제정·개정 동향 ..... 1

- 1. 문화예술진흥법 (개정).....2
- 2.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개정).....3
-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4
-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5
- 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5
- 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6
- 7.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7
- 8.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7

## II.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 8

- 1. 서울특별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9
- 2.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10
- 3. 부산광역시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11

## III.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법제처) ..... 12

- 1.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보조금 지원 관련 (전북 익산).....13
- 2. 공공급식 지원 조례에 따른 위원회 운영 관련 (충남 당진).....16
- 3.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장의 증인 채택 관련 (경기 의왕).....18

I

# **법령 제정 · 개정 동향**

---

# 문화예술진흥법

1 [일부개정 `22. 9. 27. 시행 `23. 3. 28.]

소관부서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과), 044-203-2518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새로운 예술영역이나 장르의 발현, 예술의 융·복합화 등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의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종전에는 문화예술의 장르만을 열거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문화예술의 장르와 함께 문화예술의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속성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장르를 추가하며,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과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 활동 장려·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 제도 도입 이후 실제 인증사례가 전무한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2 [일부개정 '23. 3. 3. 시행 '23. 3. 3.]

소관부서 :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76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소속 상근직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격려금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사업 홍보 목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언론관계자 외에 홍보관계자에 대해서도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 외에 그 선수의 지도자 및 그 선수가 소속된 기관·단체의 임직원에게 대해서도 격려품과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공공단체·민간단체 등이 견학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후보자 명의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일부개정 '23. 3. 7. 시행 '23. 3. 7.]

소관부서 : 문화재청(수리시술과), 042-481-4865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설계심사관\*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설계심사관의 지정 요건 중 하나인 문화재수리 등 업무 경력기간을 일률적으로 5년 이상으로 정하던 것을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설계심사관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경력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문화재수리업자 등으로 구성된 문화재수리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를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설계심사관: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 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3. 3. 15. 시행 '23. 3. 7.]

소관부서 :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83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계약에 대한 계약보증금의 비율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0으로 하향 조정하고, 계약상대자가 성질상 분할 가능한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인수·관리·사용하고 있는 기성·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제외하고 세입조치 하도록 하며,
-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 또는 회장인 경우로서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 없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3. 3. 28. 시행 '23. 3. 28.]

소관부서 :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044-202-3022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관련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6 [일부개정 '23. 2. 20. 시행 '23. 3. 20.]

소관부서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044-215-4313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서의 지방 저가주택의 범위에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 중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지방 저가주택의 요건의 하나로 정하는 한편,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신청 시 관할세무서장의 허가 여부에 관한 통지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7 [일부개정 '23. 2. 21. 시행 '23. 3. 21.]

소관부서 : 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 044-203-2749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외래어인 ‘펜스’를 ‘울타리’로, ‘파고라’를 ‘피걸러(서양식 정자)’로 순화하는 한편, 현행의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계획’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시·군·구계획’으로 구분하고, 각 계획 간의 상호 연계를 위해 시·도지사는 ‘광역계획’ 수립 시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계획’ 수립 시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수립하도록 함.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8 [일부개정 '23. 3. 28. 시행 '23. 3. 28.]

소관부서 : 통일부(이산가족과), 02-2100-5911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추석 전전날(음력 8월 13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II

##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

1

## 서울특별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의결일 '23. 3. 10.]

### ■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문화재의 홍보 및 보호 관련 활동을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시 문화재 보존과 가치확산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가.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에 관한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나.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바.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2

#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결일 '23. 3. 10.]

### ■ 제정이유

마약류 용어가 상품 명칭과 마케팅 등에 남용되면서 마약이 불법적인 유해 약품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바,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 차원에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 나.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다.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라. 시장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마약류 상품명에 무분별하게 오남용되지 않도록 조치 및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 마.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해 추진 가능한 사업을 명시함(안 제8조)

### 3

## 부산광역시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

[의결일 '23. 2. 8.]

### ■ 제정이유

생활환경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고, 환경관리 인력 등의 부족으로 시민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공사장 환경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생활소음·진동’, ‘비산먼지’, ‘공사장’, ‘관급공사’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 나. 저감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과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4조)
- 다. 저감대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관급공사 관리 및 비산먼지 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환경관리 강화방안 권고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마. 공사 감독부서에 보안 요청 및 구·군 합동점검 요청사항을 정함(안 제8조)
- 바.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할수 있도록 정함(안 제9조)

Ⅲ

## 자치법규 입법익견 해석례 (법제처)

---

1

익산시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익산시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외에 익산시 조례에 별도의 보조금 지급근거를 두어야 하는지

[의견23-0053] 전라북도 익산시

## ■ 질의요지 및 의견

### ○ 질의요지

익산시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익산시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외에 익산시 조례에 별도의 보조금 지급근거를 두어야 하는지?

### ○ 의견

익산시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익산시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외에 익산시 조례에 별도의 보조금 지급근거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 이유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전라북도조례”라 한다) 제7조제7호에서는 전라북도지사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정비사업을 하는 농어업인 등에게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익산시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위 전라북도 조례 외에 별도의 보조금 지급근거를 익산시 조례에 마련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 즉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생산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농업 생산기반의 정비, 보강,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 나목에서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에서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직접 지출근거를 마련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법제처 2017. 8. 23. 회신 의견 17-0196 참조).

그렇다면, 전라북도지사가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정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전라북도조례 제7조제7호는 ‘익산시’가 아닌 ‘전라북도’의 보조금 지급 근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익산시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제4호를 근거로 농업인에게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 때 “조례”는 보조금의 지급 주체인 익산시의 조례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8. 23. 회신 의견 17-0196 참조).

따라서 익산시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익산시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전라북도조례 제7조 외에 익산시 조례에 별도의 보조금 지급근거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조례에서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도록 한 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7항 관련)

[의견23-0034] 충청남도 당진시

## ■ 질의요지 및 의견

### ○ 질의요지

「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당진시 공공급식지원 심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 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진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

###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이유

「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공공급식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시에서는 공공급식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나,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급식조례 제5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면서,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1호),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대상·방법·규모·내용에 관한 사항(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정원(제1항),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방법과 정례회의의 개최 회수(제2항), 당연직 위원(제3항)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7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공공급식조례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들을 정하면서, 공공급식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규칙을 반드시 정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공급식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급식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조속히 해당 규칙을 제정하여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사전에 출석·증언 요구를 받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증언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의3제1항 관련]

[의견23-0038] 경기도 의왕시

### ■ 질의요지 및 의견

#### ○ 질의요지

사전에 출석·증언 요구를 받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곧바로 증언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둘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

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22. 11. 4. 회신 의견 22-0276 참조).

「지방자치법」 제49조에서는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으며(제3항),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 서류제출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을 통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왕시에서는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의3제1항과 같이 사전에 출석·증언 요구를 받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곧바로 증언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의 요구는 늦어도  
그 출석·증언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을 통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적어도 3일 이상의 준비기간 동안 충실한 준비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출석  
·증언 요구를 받은 자가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  
또는 불출석을 하는 경우에 고발이나 과태료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그러한 제재를 받지 아니 할 수 있도록 상당한 준비기간을 주려는  
것인바(대법원 1997. 9. 26. 선고 97추43 판결 참조), 사전에 출석·증언  
요구를 받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곧바로  
증언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취지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이 사전에 출석·증언 요구를 받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곧바로 증언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